

# 감 사 보 고 서

교육부 장관 귀하  
학교법인 원광학원이사회 귀중

사립학교법제19조제4항 및 사학기관재무·회계규칙제41조에 의하여, 학교법인 원광학원(원광대학교)의 2021회계연도 감사보고서를 제출하고자, 사학기관 감사업무처리 유의사항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. 감사결과(다음의 지적사항을 제외하고는) 학교법인 원광학원(원광대학교)의 재산상황·회계와 이사회 운영 및 그 업무 처리는 관계 법령에 의거 적정하게(지적사항이 있을 경우 내용 명시)처리하고 있음을 사학기관 감사업무처리 유의사항에 따라 확인하였습니다.

다음 : 지적사항 내용

구 분	재산·회계감사 지적사항		이사회 운영 및 업무감사 지적사항(건)	비고 <지적사항 없는 경우 : 지적사항 없음(표기)>
	건수	금 액		
1. 법인 일반업무 관련	없음		없음	
2. 법인 수익사업 관련	없음		없음	
3. 학교 관련	없음		없음	
4. 부속병원 관련	없음		없음	
계				

- 붙임 : 1. 학교법인 원광학원 감사지적사항 및 시정 조치계획(별지 제1의1호 서식)  
 2. 원광대학교 감사지적사항 및 시정 조치계획(별지 제1의2호 서식)  
 3. 사학기관재무·회계규칙에대한특례규칙 제41조에 의거 작성하는 내부 감사보고서

2022년 4 월 22 일

학교법인 원광학원

감 사 이 화 진 (인)

감 사 이 경 우 (인)

감 사 이 연 상 (인)

(공인회계사 등록번호 제2547호)

※ 공인회계사를 선임한 대학에 한하여 공인회계사 등록번호 기재

피감사 기관장 학교법인 원광학원 이 사 장 <u>성시종</u> (인)	2022년 4월 22일	피감사 기관장 원광대학교 총 장 <u>박맹수</u> (인)	2022년 4 월 22 일
--	--------------	--	----------------

## 감사보고서

학교법인 원광학원 이사장 귀하

우리는 사립학교법 제19조제4항 및 사학기관재무·회계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광대학교의 2022년 2월 28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자금계산서·운영계산서 및 각 부속명세서를 감사하였습니다.

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우리는 일반적인 감사기준을 준용하였습니다.

우리의 의견으로는 별첨 재무제표는 사학기관재무·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에 따라 원광대학교의 2022년 2월 28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자금수지 및 운영성과의 내용을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.

(다음 : 지적사항 있으면 나열 또는 별첨함)

2022년 4월 22일

학교법인 원광학원

감 사 이 회 진

감 사 이 경

감 사 이 연 상

(공인회계사 등록번호 제2547호)

피감사자 (입회인)

직명 원광대학교 총장

성명 박 맹 수 (인)

(사학기관 감사업무 처리유의사항 별지 제1의2호 서식)

## 원광대학교 감사지적사항 및 시정 조치계획

(회계연도 : 2021년 3월 1일부터 2022년 2월 28일까지)

· 지적사항(내용) : 교비회계

감사결과 지적사항(내용)	피감사기관장의 시정 조치계획
해당사항 없음.	
피감사기관장 <u>원광대학교 총장 박맹수</u> 직인 (사인)	

(기술내용이 많을 경우 별도 붙임)

(교비회계 · 부속병원회계)

